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증명 수수료>란의

- 1. 신원에 관한 사항 중 “재직, 경력 및 퇴직에 관한 증명”, “연수 및 이수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400원”을 각각 “300원”으로 하고, “경기입상에 관한 증명”을 “각종 수상에 관한 증명”으로 하여 수수료 “400원”을 “300원”으로 하며,
- 3. 회계에 관한 사항 중 “물품 납품 및 공사 사실 등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600원”을 “300원”으로 하고, “원천세 공제에 관한 증명”, “교육비납입증명”, “학비감면증명”의 수수료 “400원”을 각각 “300원”으로 하며, “미확정 채권 양도에 관한 증명”,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600원”을 각각 “300원”으로 하고,
- 4. “학원,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600원”을 “300원”으로 하며,
- 5.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의 수수료 “400원”을 “300원”으로 한다.

<증명 이외의 수수료>란의

- 1.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를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3」의 고등학교 명칭 번호 82 도봉고등학교를 “누원고등학교”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초등학교(남부)의 “서울영원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금동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북부)의 “서울태랑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덕암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동작)의 “서울원신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봉현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학교(남부)

번호	명 칭	위 치
60	서울 금 동 초 등 학 교	금천구 시흥동 산91-3

초등학교(북부)

번호	명 칭	위 치
58	서울 덕 암 초 등 학 교	노원구 상계동 1274

초등학교(동작)

번호	명 칭	위 치
39	서울 봉 현 초 등 학 교	관악구 봉천2동 1704

별표2중 중학교(동부)의 “동대문여자중학교”란을 “동대문중학교”로, 중학교(남부)의 “오류여자중학교”란을 “경인중학교”로, 중학교(중부)의 “장충여자중학교”란을 “장원중학교”로, 중학교(강동)의 “명일여자중학교”란을 “명일중학교”로 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중학교(성북)의 “수송중학교”란 다음에 “삼각산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0
------	-----

2002년 12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2002년 1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전장하)

- 가. 개정이유
  - 「葬事등에관한法律」 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명칭을 정비
  - 시립 장묘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 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토록 함(안 제4조, 제5조).
  -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하고 저소득시민 등의 감면과 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다르게 적용토록 함(안 제7조제2항).
  -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동수)

-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葬事등에관한法律」의 입법취지에 따라 시립묘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장사(葬事) 일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장사문화(葬事文化) 개선에 관한 선언적 규정과 이를 위하여 자치구가 공설 화장장과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조항은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으로